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9.

제 안 자 : 환경노동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심사 경과

의안명	대표발의자	발의일	경과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6579호)	정부	2024. 12. 17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 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6860호)	우재준	2024. 12. 23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 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7814호)	김소희	2025. 1. 24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 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9291호)	윤준병	2025. 3. 24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 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10751호)	전재수	2025. 6. 12.	※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직회부

나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(2025. 9. 17.)에서
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
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, 제
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(2025. 9. 19.)
에서 이를 심의·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
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,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
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, 환
경부는 민원센터 운영,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
나,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,
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
위치,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, 충전시설의
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. 또한, 전
기자동차,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될 수 있
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, 적정 관리
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
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므로, 현재 환경부장관

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·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,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「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」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,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종전 「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」에 따라 면제하던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면제 근거 규정(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).
- 나.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·운영자에 대하여 충전시설 설치·이용 정보 등록 의무·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과(안 제58조의10·제58조의12항 신설 등).
- 다.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인·허가 의제조항 유효기간 연장(안 제58조의11).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제58조의13부터 제58조의15까지로 하고,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10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)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, 규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, 충전요금, 고장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

하고,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8조의11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)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·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58조의12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) ①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,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,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의15(종전의 제58조의12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(종전의 제58조의12) 제2항 중 “제58조의11제1항”을 각각 “제58조의14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2조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제94조제3항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제9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
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안 제35조의2제3항 및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충전시설 설치정보 등록의무에 관한 경과조치) 제58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.

제3조(충전시설 이용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) 제58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

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의2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35조의2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u> 제58조의10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) ① <u>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, 규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, 충전요금, 고장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</u> ③ <u>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</u>

<신 설>

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,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8조의11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)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·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58조의12(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) ①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

	<u>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,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,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제58조의10 · 제58조의11 (생략)</u>	<u>제58조의13 · 제58조의14 (현행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과 같음)</u>
<u>제58조의12(인·허가 등의 의제)</u>	<u>제58조의15(인·허가 등의 의제)</u>
① 환경부장관이 <u>제58조의11제1항</u>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·신고·지정·인가·협의를(이하 “인·허가 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·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 1. ~ 14. (생략) ② 환경부장관은 <u>제58조의11제1항</u>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	① ----- <u>제58조의14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제58조의14제1항</u> -----

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9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92조(벌칙)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9의2.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u>
10. ~ 14. (생략)	10. ~ 14. (현행과 같음)
제94조(과태료) ①·② (생략)	제94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③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10의2. 제58조의제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</u>
10의2. (생략)	<u>10의3. (현행 제 10호의2와 같음)</u>
11. ~ 16. (생략)	11. ~ 16. (생략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	④ ----- -----

⑤ · ⑥ (생략)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